



2016. 5. 29 / 12. 20. 일부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 어떻게 적용할까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목 차

I 총괄

II 학교 교육과정

III 방과후학교

IV 입학전형

I 총괄

0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3쪽)

-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02. 용어 정의(4쪽)

• 교육관련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 등" 이라 한다)

•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이 국가 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

• 선행학습

-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02. 용어 정의(6쪽)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비교〉

구분	선행교육	선행학습
주체	교육관련기관	학습자
정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선행학습의 범위(7쪽)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선행학습의 정의(7쪽)

Q. 선행교육의 정의에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1~2, 3~4, 5~6으로, 중·고등학교는 1~3학년 전체가 하나의 학년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을,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0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8쪽)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한
지도·감독
- 선행교육 부작용 예방과 시정을 위한 노력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한 지도·감독(10쪽)

-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교가 국가에서 정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맞게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학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 자료 : 교과진도계획표, 교육과정편성표, 지필·수행평가 자료, 각종 교내 대회 자료, 입학전형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등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한 지도·감독(10쪽)

교육부

-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여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 공정한 학생 평가를 위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을 작성하여 제공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등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이 선행교육 위반 및 선행학습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조정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한 지도·감독

시·도 교육청

-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가 반영된 시·도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고시하여 학교가 법 위반 없이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안내 및 지도
- 시·도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작성 안내하여 학교에서 공정한 학업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관리
- 학교가 국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그 내용에 대해 공정하게 학생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학교가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점검단 또는 컨설팅 지원단 등을 조직·운영

(2) 선행교육 부작용 예방과 시정을 위한 노력

- 선행교육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해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한다.

선행교육예방 연수센터의 역할

- 선행교육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분석 시행
- 선행교육 부작용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연구 수행
- 선행교육 부작용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3) 국가 수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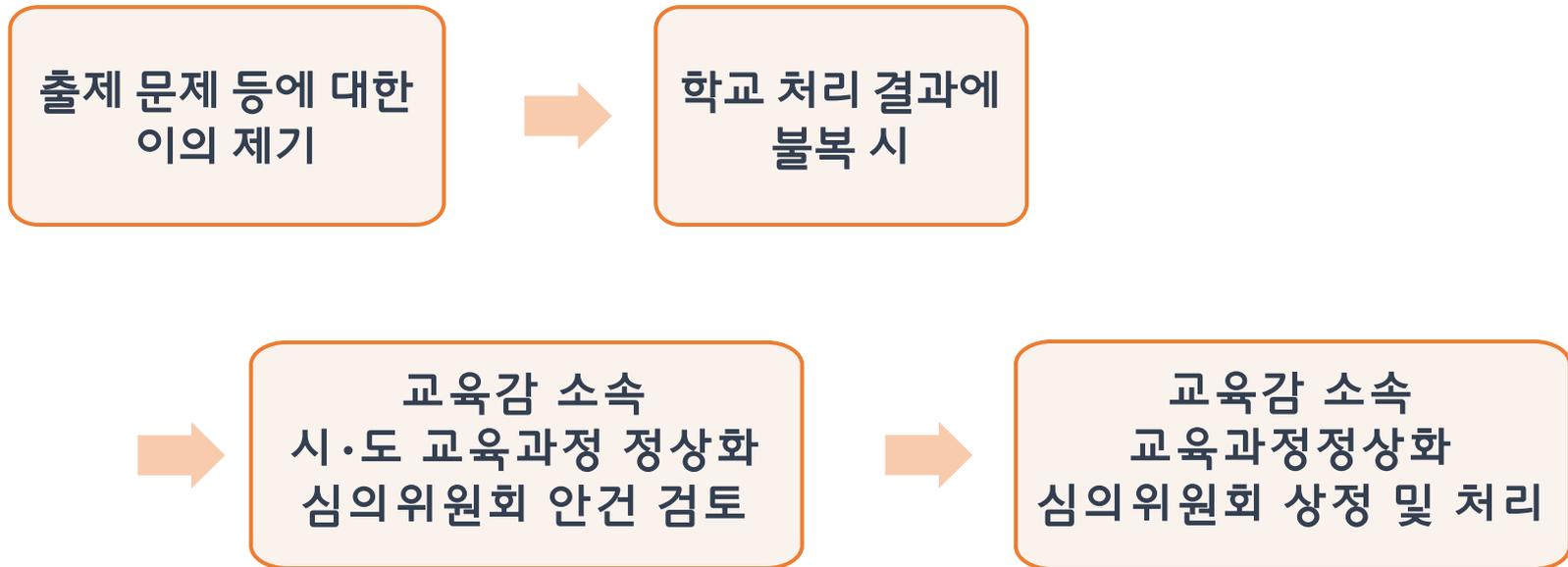
- **교육부장관**

: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교육감**

: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3) 국가 수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종류(14쪽)

Q.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와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차이점〉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주체	교육부 장관	교육감
심의 사항	국가교육과정 운영, 선행교육방지 대책, 국립학교 및 대학 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기타 장관의 요청 사항 등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기타 교육감의 요청 사항 등
위원회 구성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 소속 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과정·학습이론·대학입학전형 관련 전문가, 학부모·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도 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교육과정·학습이론·학교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학부모·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04. 학교의 책무(15쪽)

-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의 책무

- (1)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

- (2)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3)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

- (4)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

※ 제5조의 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16.12.20]

교원대상 선행교육예방교육 방법(17쪽)

Q.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교육 예방 교육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예시) >

연수 주제	연수 목적	연수 내용
1. 공교육정상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정상화의 의미와 목적	가. 공교육정상화 정책의 이해 나. 「공교육정상화법」의 이해
2.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성취기준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역량 제고	가. 국가 교육과정, 시·도 수준의 지침,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와 활용 나. 성취기준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의 이해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서의 활용 다.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와 교과 간 통합적 요소의 이해와 활용 라. 성취평가제와 입시제도의 이해와 적용
3. 선행교육 판단 기준	선행교육 판단 기준의 이해와 활용	가. 선행교육 판단 기준의 이해 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과정에서 선행교육 판단 기준의 활용
4. 정보 공시	정보 공시제와 관련 교육 정책의 이해와 적용	가. 정보 공시제의 의미와 관련 법규 나. 정보 공시의 범위와 적용 방법

학부모 대상 선행교육 예방 교육 방법 (17쪽)

Q.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행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회의, 간담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이용, 기타 학부모가 참여하는 행사 등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 정보 공유, 학부모 의견 수렴(청취), 학습상담 기회 제공, 진로·진학 관련 설명회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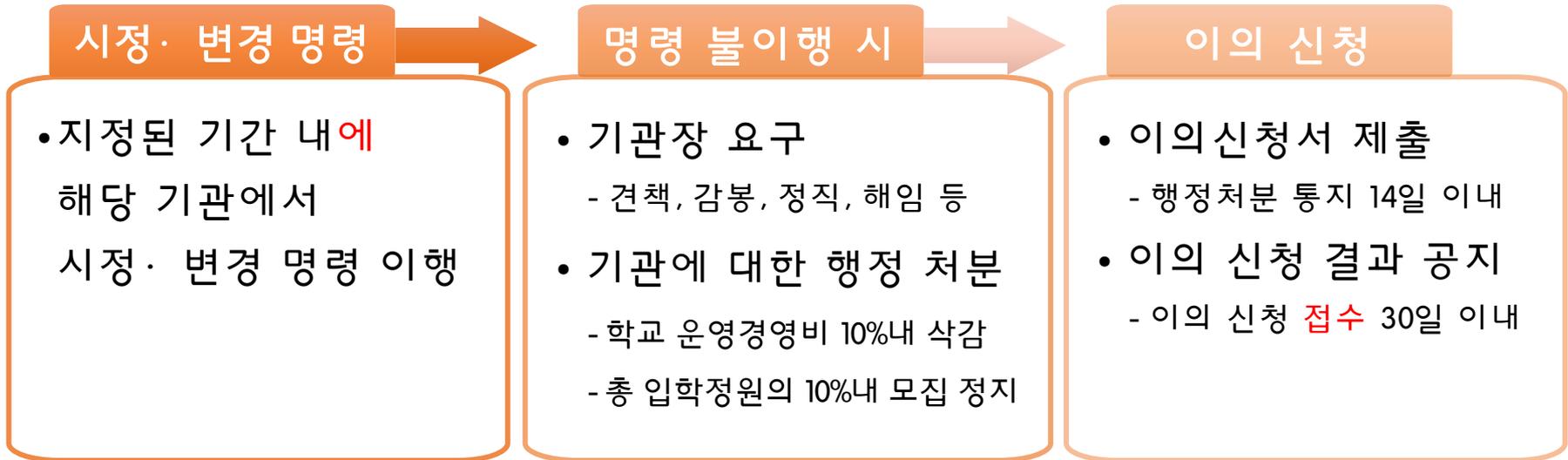
05. 학부모의 책무(19쪽)

-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수업공개의 날, 학부모 회의 등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학부모 및 학생 대상 홍보 프로그램 예시〉

홍보 주제	홍보 내용
1. 공교육정상화의 의미와 목적	가. 공교육정상화 정책과 「공교육정상화법」의 이해 나. 학교 교육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역할과 참여
2. 학교 교육정책과 학교교육과정의 이해	가. 입시 정책과 평가 제도의 이해 나. 우리 학교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일정 안내
3. 학교 교육 활동에의 효과적인 참여방법	가. 자녀의 바람직한 교우 관계 형성 방안 나.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의 안내

06. 시정 및 변경 명령과 이의 신청(20쪽)



06. 시정 및 변경 명령과 이의 신청

(3) 이의신청

국가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Ⅱ 학교 교육과정

01. 교육과정 편성·운영(26쪽)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교육 과정 편성· 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 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 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 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교육의 해당범위(28쪽)

Q. 한 학기 내에서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선행교육의 해당범위(28쪽)

Q. 동일 교과목을 2개 학기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학기의 학습 내용을 이번 학기에 미리 지도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네,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다음 학기 **학습할** 내용을 미리 지도하는 것은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보공시에 반영하여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유의점

Q.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 I 과목에서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진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 때 위계가 있는 단원 간에는 위계가 반영되어 학습 순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동일 교과목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교과 간 통합 편성·운영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선행교육의 해당범위

Q. [고등학교] 한 학기 내에서 위계가 있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계에 어긋나지 않게 진도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학년 2학기에 미적분 I 과 미적분 II 를 동시 개설할 수 있지만, 미적분 I 을 모두 배우고 중간고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미적분 II 를 배우고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진도계획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선행교육의 해당범위(28쪽)

Q. 동일 학기에 한 과목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분담하여 지도하는 것도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동일 학기에 한 과목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나누어 지도하는 방식 자체가 선행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사 간에 가르칠 단원을 배분할 때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하게** 될 학습 순서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의 위계에 적합하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선행교육의 해당범위(29쪽)

Q.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A. 입학예정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상급 학교(입학예정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선행교육의 해당범위(29쪽)

Q.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교육과정 및 정보 공시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선행교육의 해당범위

Q. [고등학교] 편성된 과목과는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위계가 없는 교과목의 경우>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시 내에서 세계사의 내용을 일부 연관 짓거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한국사와 세계사의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의 교육 내용을 의도적으로 세계사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거나 한국사를 세계사 중심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선행교육의 해당범위

Q. [고등학교] AP, UP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 AP, UP는 대학에서 개설한 특정 과목을 고등학생이 미리 이수하여 대학 진학 후 과목 학점을 미리 취득하는 제도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선행교육의 해당범위(30쪽)

Q. [고등학교]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으로 거점학교에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때 선행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학생은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졸업 **이전에** 개설되지 않을 교과목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을 거점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위계가 있는 과목을 거점학교에서 수강할 경우에는 학생이 소속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과목 개설의 위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선행교육의 해당범위(30쪽)

Q.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행교육의 해당범위

Q. 초 6 ~ 중 1, 중 3 ~ 고 1 연계한 영어, 수학, 논술 등의 교과 프로그램(캠프 등 활용 포함) 운영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교육과정을 앞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선행교육의 해당범위

Q. 교과 관련 동아리활동에서 선행교육이 허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가 동아리활동에서 의도적으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에 비하여 한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내용을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해당 학기에 편성 · 운영되는 학교교의 교과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범위에서의 심화학습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요청(수업시간, 쉬는 시간 중의 질문 등)에 따른 선행요소를 포함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02. 평가(31쪽)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를 선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평가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구		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재학생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각종교내대회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입학예정학생		입학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선행교육의 해당범위

Q.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의 학습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일부의 소수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교과목을 두 학기 이상 편성했을 때 첫 번째 학기 기말고사 이후의 내용을 두 번째 학기의 중간고사에 출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충실한 교과목 이수를 위한 평가 방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진도표와 평가 계획에 이와 같은 문항 출제 계획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능 등의 평가에 대비하고자 학교 또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 문항을 출제하는 경우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불일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행교육의 해당범위

Q.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서 다음 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다음 학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는 선행 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 진도가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 비하여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보 공시의 수정 없이 학교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는 2학기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1학기에 지도하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에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 학기 안에서 지도의 순서를 바꾸거나 빠르게 지도하는 경우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교과 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 학기 안에서 교육 내용의 위계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선행교육의 해당범위

Q.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 하면서 수학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엇각과 동위각'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행교육의 해당범위

Q.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할 때 입학 이후의 학습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학습한 내용과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합니다. 입학 단계 이전 현재 재학 중인 학교 급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학 전 진단평가에서 입학 이후의 1학년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라면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선행교육의 해당범위

Q.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선행교육의 해당범위

Q.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경시대회에서 1학년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교과 관련 교내 경시대회에서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1학기 이상 벗어난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교내 교과 관련 경시대회는 학년별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선행교육의 해당범위

Q.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 각종 대회(영어연극 대회, 에세이쓰기 대회 등) 및 각종 교내 대회(우리 역사 바로 알기, 골든벨 교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것도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교외 대회 참여를 위해 학기를 넘어서는 수준의 내용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학교)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가 대상 학년을 제한하거나 학년별로 대회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03. 적용 예외(35쪽)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 적용 배제 교과
 -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특성화고)

Ⅲ 방과후학교

01. 방과후학교_관련 법규 및 해설(38쪽)

-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

-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201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중·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과정에서의 선행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201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01. 방과후학교_관련 법규 및 해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2조의2(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학생 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총재학생의 10퍼센트 이상인 학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2.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에 따라 교육 기회의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학교

Q.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합니다.

Q.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A. 2016년 5월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선행출제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휴업일 중 방과후학교와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만을 한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은 2018년 2월까지,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은 2019년 2월까지 한시 운영 후 성과 등을 분석하여 계속 운영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IV 입학전형

01. 중·고등학교_관련 법규 및 해설(44쪽)

<공교육정상화법>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

-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2월 말일,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 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01. 중·고등학교_관련 법규 및 해설

<공교육정상화법>

제9조 (학교의 입학전형 등)

-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2월 말일,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 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01. 중·고등학교_관련 법규 및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범위]

① 범위와 수준

-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이라 함은 중학교 입학전형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대상 학교

-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국제중학교,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2009.3.27.이전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학생 전원을 선발하는 일부 자율학교(충남 한일고, 공주대부설고, 전북 익산고, 경남 거창고 등)가 해당된다.

01. 중·고등학교_관련 법규 및 해설

〈공교육정상화법〉

제9조 (학교의 입학전형 등)

-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2월 말일,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 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01. 중·고등학교_관련 법규 및 해설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가능 활동〉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 활동결과 등)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외부기관이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주최·주관한 행사,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을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

01. 중·고등학교_관련 법규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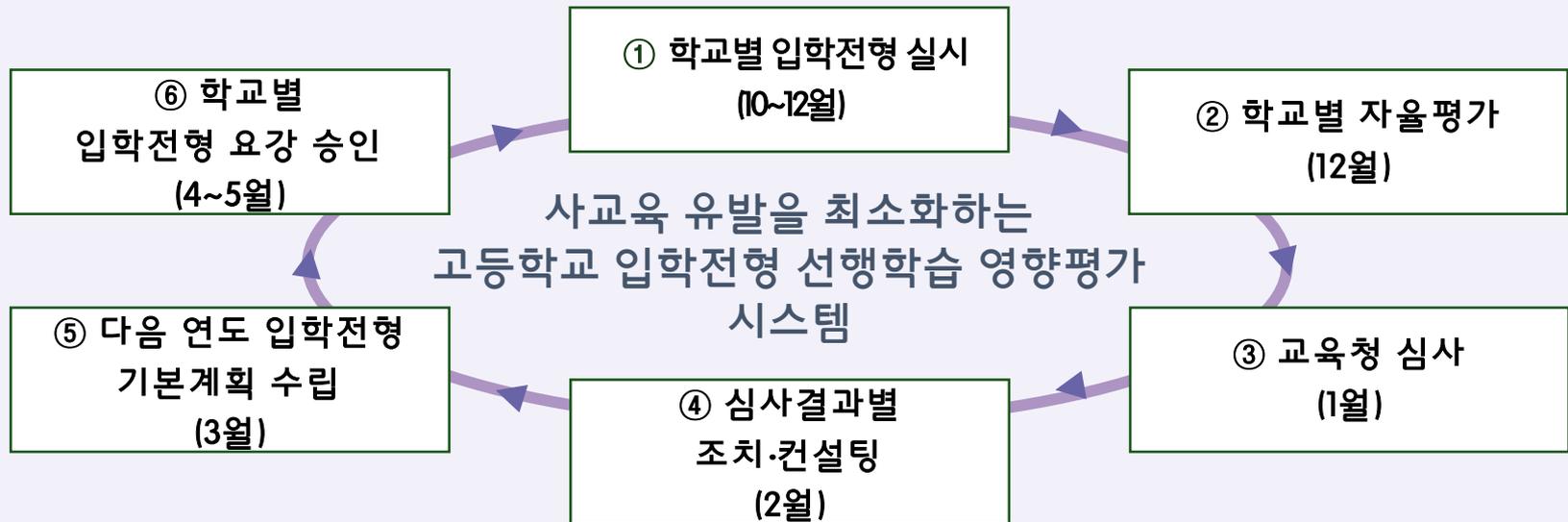
〈공교육정상화법〉

제9조 (학교의 입학전형 등)

- 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도록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2. 각종 인증시험 성적
 3. 각종 자격증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2월 말일,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제출 받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01. 중·고등학교_관련 법규(47쪽)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사후 관리>

시·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2회 이상 중복 지적된 학교와 개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년 단위 운영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 학교의 지정 취소 사유로 활용**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Q.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48쪽)

A. 학교생활기록부를 입학전형 자료로 제출 시 해당 부분을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맞지 않게 작성된 경우
:전형 자료 제출 전 해당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을 통해 삭제한 후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변경 전에 입력한 입학전형 반영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맞게 작성되었으나 배제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보이지 않게 처리한 후 제출

02. 대학_관련 법규 및 해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결과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개정 2016.5.29.>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02. 대학_관련 법규 및 해설

•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기관

: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대상이 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적용 배제 대상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대학등의 장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자체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실시

④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학등의 장은 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Q.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나요?

A.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2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선행학습 영향 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 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Q. 면접·구술고사의 경우,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나요?

A. 교과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면접,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 확인 면접 등의 경우에는 논술, 면접·구술고사와 달리 간소화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인성이나 학교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면접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면접활용 문항을 예시로 제시하는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과지식을 직접 묻는 면접은 아니더라도,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항을 예시문으로 활용하거나 교과 지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을 측정하는 면접은 논술 등과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해당 면접이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으며, 인성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는 면접이라는 점을 명시



감사합니다